



대구 중심, 달서의 시대

-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5. 1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[기획전략과]

제안 설명서

설명자: 기획전략과장

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,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「지방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5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) 및 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,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(의안번호 제2023-793호)에 따라,
- 행정안전부 순세계잉여금 효율적 활용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먼저 안 제4조제2항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해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기준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(안)으로 변경하였습니다.
- 안 제4조제5항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사용 제한 한도를 삭제하였으며,
- 안 제5조제1항은 통합기금 재원의 고금리 예금 예치를 위한 효율적 운용·관리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.
- 안 제7조제2항제5조는 위원회 심의 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였으며,

○ 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은 심의내역과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 관리 강화를 위해 신설하였습니다.

○ 안 제9조는 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한을 5년 연장하였습니다.

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

○ 본 조례안을 2024. 12. 2일부터 12. 23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,

○ 2025. 1. 14일 조례·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

○ 조례 개정으로 직접적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「대구광역시 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 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○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협조 요청에 따른 조례 정비로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오니,

○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0092 5005
----------	--------------

제출년월일: 2025. 1. 23.

제출자: 달서구청장
(기획전략과장)

1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행정안전부 순세계잉여금 효율적 활용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(안 제4조제2항)
- 나.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사용 제한 한도 삭제(현행 제4조제5항 삭제)
- 다.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·관리 의무 명시(안 제5조제1항)
- 라.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심의 포함(안 제7조제2항제5조 신설)
- 마.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 관리 강화(안 제7조제4항, 제7조제5항 신설)
- 바.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 연장(안 제9조)

3. 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, 제5조 및 제16조
- 2)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(의안번호 제2023-793호, 2023. 10. 23.)
- 3)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-1366(2024. 4. 4.)호 및 市 예산담당관-4251(2024. 4. 4.)호
관련 순세계잉여금 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례 개정 협조 요청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(2024. 12. 2. ~ 12. 23.)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비용추계서: 비해당
- 4)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: 원안 동의
- 5)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6)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 중 “20%”를 “100분의 20”으로, “10%”를 “100분의 10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%를 초과한”을 “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3년 평균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”으로, “초과분의 20%”를 “증가분의 100분의 50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“기금”을 “기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설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”를 “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·관리하고,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

④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(금융상품별 계좌번호·금액, 약정기간, 이자율, 예상이자액 등)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.

1.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

2.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·의결 내용

3.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변경사항 등

제9조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 다만, 제 5호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.

1. 대구광역시 달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세입 중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하여 기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

2. ~ 6. (생략)

⑤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5조(통합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합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

② (생략)

제7조(통합기금의 운용심의) ① (생략)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

-----.

1. -----

----- 기금 -----

2. ~ 6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제5조(통합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-----

-----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·관리하고,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통합기금의 운용심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을 심의한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5. (생략)

③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제9조(존속기한) 통합기금의 존속
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
한다.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
사항

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
여 금융기관 예치현황(금융상품
별 계좌번호·금액, 약정기간,
이자율, 예상이자액 등)을 심의
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
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
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.

1.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

2.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·의결
내용

3.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변경
사항 등

제9조(존속기한) -----
----- 2030년 12월 31일-----
----.

【관 계 법 령】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5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·운용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·유동성·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□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(의안번호 제2023-793호, 2023. 10. 23.)

- ①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·관리 의무 명시
- ②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심의 포함
- ③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 관리 강화

□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-1366(2024. 4. 4.)호 및 市 예산담당관-4251(2024. 4. 4.)호 관련 순세계잉여금 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례 개정 협조 요청

순세계잉여금을 ①법정 의무사항 정산, ②채무 상환, ③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우선 사용하여 효율적 활용 도모